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0.9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7만1천원”을 “7만1700원”으로, “7만2700원”을 “7만34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780만7천원”을 “788만7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56만6천원”을 “865만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60만8천원”을 “768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87만1천원”을 “896만1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41조 단서 중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의”를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856만6천원”을 “865만3천원”으로, “470만9천원”을 “475만7천원”으로, “856만6천원”을 “865만3천원”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매우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종사한”을 각각 “종사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경력란 및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1)부터 7)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근무한”을 각각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3)의 경력: 100퍼센트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각령 제901호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3.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되,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7 제1호나목1)가)부터 다)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종사한”을 각각 “종사한”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경력란 및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다)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근무한”을 각각 “근무한”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별표 17 제2호나목1)다) 및 라)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종사한”을 각각 “종사한”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경력란 및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근무한”을 각각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	-----------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되,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9 제1호나목1)가)부터 다)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종사한”을 각각 “종사한”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경력란 및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마)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근무한”을 각각 “근무한”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별표 19 제2호나목1)다) 및 라)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종사한”을 각각 “종사한”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경력란 및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의 경력란 중 “상근으로 근무한”을 각각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	-----------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되,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환산율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단서 중 “80퍼센트”를 “80퍼센트 이내”로, “50퍼센트”를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환산율란 중 “100퍼센트”를 각각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100퍼센트 이내

별표 22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력란 및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100퍼센트 이내
--	-----------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 중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 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8)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이내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되,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법무부”를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2, 별표 32 및 별표 3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

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

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

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군인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을 포함한다)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제나목을 초과하는 금액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등급·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39조제4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액표(제70조제2항 관련)

평가등급(지급등급)	지급액
매우우수	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우수	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흡 및 매우미흡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u>7만1천원</u> 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u>7만2700원</u> 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u>7만1700원</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	1. -----

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u>780만7천원</u> 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 ----- <u>788만7천원</u> ----- -----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u>856만6천원</u>	2. ----- ----- ----- <u>865만3천원</u> -----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760만8천원</u>	3. ----- ----- <u>768만5천원</u> -----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887만1천원</u>	4. ----- ----- <u>896만1천원</u> -----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생략)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u>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u>		<u>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u> ----- ----- -----.
③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856만6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70만9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856만6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 ----- 865만3천원 ----- ----- ----- ----- ----- 475만7천원 ----- ----- ----- ----- ----- 865만3천원 ----- -----.
④ (생 략)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1조(연봉의 지급) ----- ----- 연봉 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	③ (생 략)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우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 평가 등급별로 별표 41에 따라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523